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가합531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피고주식회사 B

변론 종결2018. 11. 7.

판결 선고2018. 11.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본당 및 지예배당을 둔 D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교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교회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7. 10. 25. 접수 제97886호로,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7. 10. 25. 접수 제97887호로,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7. 10. 25. 접수 제97888호로 각 2017. 9. 29.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교회는 자치규범인 'D교회의 운영원칙(이하 '운영원칙'이라 한다)'에 따라 운영되고, 이에 의하면 사무처리회는 교회 전체의 위임 사항을 의결하고 처리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운영원칙 제7조 제1항), 회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안을 처리하고(운영원칙 제7조 제2항), 회원이 1,000명 이상일 경우 사무처리회의 결의로 위임을 받은 소위원회가 사무처리회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소위원회는 담임목사가 의장이 되고 위 교회에서 안수받은 안수집사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운영규칙 제6조 제1항). 한편 이 사건 교회의 보통재산은 재산관리위원회가 사무처리회의 재적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담임목회자에게 위임하면 담임목회자가 이를 집행할 수 있다(운영규칙 제9조 제2항).

나.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였던 소외 E 목사는 아들인 소외 F 목사가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7. 9. 29. 피고회사와 매매계약을 권한 없이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매매계약은 운영규칙에 근거한 사무처리회나 소위원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거나 대표권 없는 E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교회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이 사건 교회의 교인으로서 위 피고회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방해받고 있고, 위 교회는 원고의

사용·수익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위 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과 그 사용·수익권에서 비롯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가지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교회를 대위하여 피고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이 사건 교회에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회사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피보전채권을 갖고 있지 않고,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교회의 구성원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데 대하여 이 사건 교회가 협력할 의무가 있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므로 위 교회 소유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원고는 교회 소유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지닌다(민법 제276조 제2항). 그러나 원고가 총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수익권은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의 자격에서 집합체로서 물건들 소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물권의 내용에 불과할 뿐 이와 별도로 원고가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총유물의 사용·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라거나 이 사건 교회가 원고의 사용·수익에 협력할 채무를 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다음으로, 원고는 총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교회의 교인으로서 갖는 총유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은 총유물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제3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일 뿐 총유의 주체인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의 권리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교회를 대위하여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소결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는 바(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자대위의 소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교회의 피고회사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노진영

판사유병호

판사고준홍

별지